

축산물 등급 판정 수수료 부과 신중해야

양돈업계 초미(焦眉)의 현안 문제는 돈콜레라 박멸 과제이다. 수출산업으로 그 생산 기반을 조성한 양돈산업에 서 늦어도 내년 10월까지 돈콜레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양돈산업의 생산 기반 붕괴와 양돈업의 파산으로 양돈농가와 관련산업이 입게 될 피해는 약 10조원으로 추정되어 우리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돈콜레라 박멸!

이 현안의 최대 과제는 어제오늘에 주어진 것이 아닌데도 모든 대책에 조급함과 허술함, 의지의 부족함이 역력하다.

일본 돈육 시장을 독점하려는 미국은 일찍이 돈콜레라 박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천7백억원의 국가 방역 예산을 투입하여 이미 20년전에 이 문제를 종결 지은 사례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다.

돈콜레라 발생 국가와 백신 접종 돈육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일본은 이미 6년전부터 돈콜레라 발생 보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가운데 돈콜레라 박멸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실히 준비를 한 결과 박멸 선포일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화급을 다루는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차실히 대처하지 못한 채 이제 와서 우리식으로 조급하게 빨리 빨리 해결코져 노력하고 있으나, 이 초미의 현안인 돈콜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시나리오와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지면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가 축산물 등급 판정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소견을 피력코자 한다.

축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에서의 생산자의 생존 전략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품질과 가격 경쟁의 논리이다. 양돈 선진국과 국내 시장 쟁탈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곧 고품질의 냉장육을 생산·공급하여 맛에서나 품질에서 우리 소비자에게 수입육과의 차별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다.

돈육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도 물론 균일성 있는 규격의 고품질의 위생적인 돈육 상품 생



한 백 용

(본회 부회장, 2000GGP 대표)

산이다. 이제 품질 등급이 높을수록 그 생산 원가도 낮다는 것은 오랜 사육 경험을 가진 양축 농가들이 넓게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축산물의 등급 판정은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국내외에서의 경쟁력과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요한 제도이다.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축산물 등급 판정 업무를 개시한지 어언 10년, 그러니 이에 관한 법(축산법 제 43조)이 마련되고 축협 중앙회가 등급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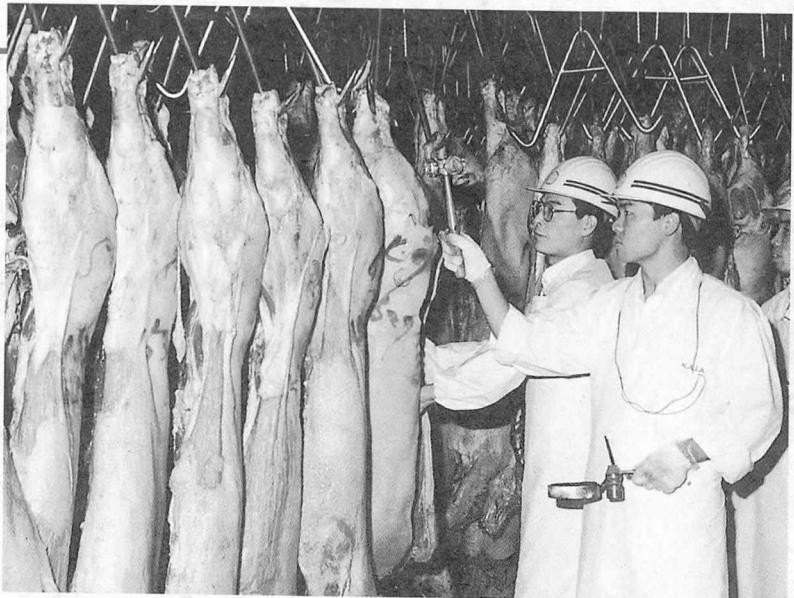
소를 설치 운영한 지는 불과 5년도 되지 않은 아직 업무의 초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축산물 등급 판정 업무는 실시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개량 방향을 설정하고 사육 방식의 개선은 물론, 출하 규격에 더욱 신경을 쓴으로써, 높은 등급의 출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로서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돼지의 경우 실시 초기인 95년도에 A등급 출현율이 불과 6.3% 지나지 않았으나, 99년 2월의 경우 24.8%가 출현되므로써 고품질 생산을 크게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는 관련 규정의 현실화에도 큰 영향이 있었다. 특히, 축산물의 소비자에 대한 설문 조사(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구분 판매에 대한 찬성률이 83%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이 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공히 필요하고 유익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 당국과 축협 중앙회는 이에 관련된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99년 3월 5일 축협 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경기도 안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정부 당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양돈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등급화 거래 지역을 대도시에서 시군 단위로 확대 등급제 유도를 위하여 1999년 23개 시군에서 2003년 까지 164개 시군으로 확대. 단,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용진군과 경상북도의 울진군, 울릉군 및 전라남도의 신안군 등 도서지역 제외.
- 둘째, 등급 판정 소요 비용의 수혜자 부담 원칙 적용을 위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소 1마리당 1,500원, 돼지 1마리당 300원의 수수료 납부.



▲도체등급 수수료는 미실시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고 제도시행의 단점 등이 어느 정도 보완된 시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벼 수매나 잎담배 수매시의 등급판정 업무는 농가 부담없이 정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같은 농민이 생산한 돼지의 등급판정 비용을 양축농민에게 부담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하여 대다수의 토론자와 당일 참석자들은 축산물 등급 판정 업무의 필요성과 지역의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발언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등급 판정 수수료를 양축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요지의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당국자를 제외한 참석자 누구도 이에 대한 찬성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로서 이 제도 자체가 아직 시행 초기에 불과하여 정착되지 못한 점과 광범위한 미실시 지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이다.

현재의 미실시 지역까지 이 제도가 정착되고, 이 제도 시행에 대한 단점 등의 보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대다수의 양축 농민들이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등급 판정 결과를 이용한 자기 가축의 개량 방향 및 품질 향상 방안 수립 등의 수준이 향상된 시점에서 수수료 부과 문제가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벼농사, 잎담배 농사, 가축의 사육 등은 모두가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사인데 벼의 수매시 등급을 판정하는 업무와 잎담배 수매시의 등급 판정 업무는 농민의 부담 없이 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농민이 생산한 돼지의 등급 판정 업무와 무엇이 다르기에 유독 돼지 등급 판정 비용만을 양축 농민에게 부담시키려 하는가? 이는 정부 당국의 축산 행정력이 부족한데서 발생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과 축산물 등급 판정 업무를 관장하는 축협중앙회는 보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등급 판정 업무 집행을 위하여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 보강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이 제도를 정착시켜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축협 중앙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축산물 등급 판정소의 기능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기능을 농산물 검사소 수준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 축협과 경합 관계에 놓여 있는 축산물위생협회 회원사 도축장의 등급 판정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집행하여 이 제도를 폭넓게 지지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길이라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공청회에서 발표된 토론자의 의견이나 참석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소망한다. **양돈**